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영찬 의원 발의]

의안번호	2544
------	------

발의일자 : 2024. 5. 28.

발 의 자 : 고영찬 의원

찬 성 자 : 고성미, 정재동 의원

1. 제안이유

사회적,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치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치과 의료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대상의 생활 안정과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안 제3조~제5조)
- 지원신청 및 지급 등(안 제6조)
- 지원제한, 분실 및 파절, 환수조치(안 제7조~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구강보건법」 제3조

2)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19조

3) 「청년기본법」 제21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2024. 5. 29. ~ 2024.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년 중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구강건강에 취약한 청년의 구강 기능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치과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보철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플란트”란 결손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한 보철물 지지 용도로 턱뼈 안이나 잇몸뼈에 식립한 인공 고정체를 말한다.
3. “보철”이란 치아가 상실되거나 부분적으로 손실되었을 때 보충하는 인공물을 말한다.
4. “시술비”란 임플란트와 보철(크라운, 인레이 포함)에 관한 제작·치료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 방안
2.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3. 그 밖에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②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청년의 임플란트, 보철 시술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③ 심미적인 목적을 위한 시술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치과 의료비를 지원받
고자 하는 청년은 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구강 진료내역서와 영수증
을 발급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
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
게 시술비 일부를 지급한다.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
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보철 시술의
경우 기존 시술 부위가 아닌 부분에 추가적으로 보철 시술이 필요하
게 된 경우에는 지원 후 7년 이내에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분실 및 파절) 임플란트, 보철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 등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시술기관 및 지원신청자의 허위 또는 부정
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구강보건법」

[시행 2024. 3. 29.] [법률 제1929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25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17. 12. 30., 2019. 12. 3.>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 6. 지역사회와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 [제목개정 2019. 12. 3.]

□ 「청년기본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53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